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93
----------	------

2025년 3월 5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3일, 이희원 의원
2. 회부일자 : 2025년 2월 6일
3. 상정일자 : 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2025년 3월 5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희원 의원)

1. 제안이유

-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교육감 등의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교육감의 헌혈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규정(안 제4조)
-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사항을 규정(안 제5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박광선)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25년 2월 3일 이희원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93호로 발의되어 2025년 2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헌혈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지난 10년간 헌혈에 참여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격히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 더욱이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수가 감소하면서 헌혈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 반면, 지난 5년간 혈액공급 대비 헌혈 실적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는 수술 등 필요한 혈액공급률은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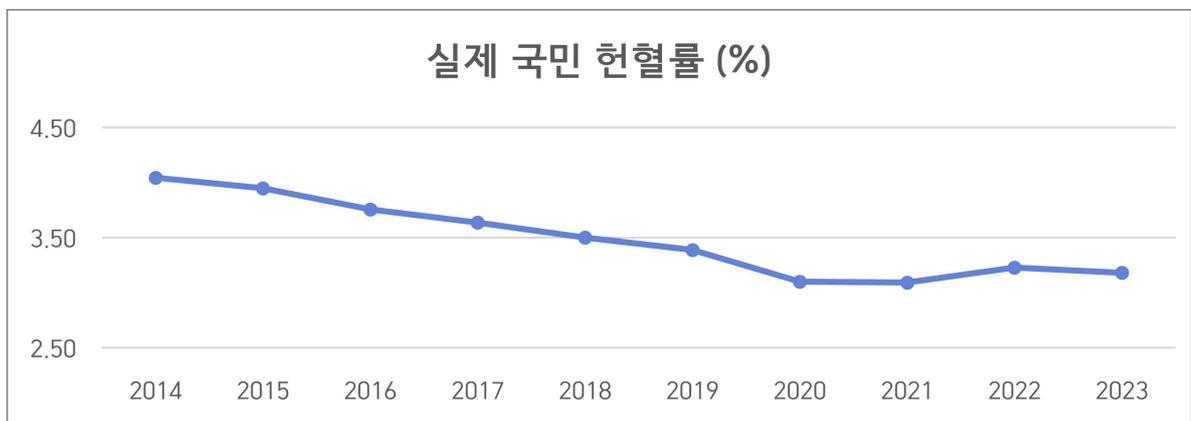
[표-1] 연도별 헌혈실적 대비 수혈용 혈액공급 실적¹⁾

연도	헌혈실적 (건)	혈액공급 (unit)	혈액공급률 (%)
2019	2,613,901	4,354,132	60.0%
2020	2,435,210	4,129,790	59.0%
2021	2,426,779	4,235,541	57.3%
2022	2,445,003	4,176,012	58.5%
2023	2,541,446	4,248,924	59.8%

[표-1] 연도별 헌혈자 수(2014~2023)²⁾

연도	총 헌혈실적 (건)	총 인구 (명)	헌혈률 (%)	헌혈자 실인원 수(명)	헌혈자 증감률 (%)	실제 국민 헌혈률(%)
2014	3,053,425	50,423,955	6.06	1,696,095		4.43
2015	3,082,918	50,617,045	6.09	1,668,424	△1.6	4.31
2016	2,866,330	50,801,405	5.64	1,596,294	△4.3	4.07
2017	2,928,670	51,446,201	5.69	1,545,022	△3.2	3.92
2018	2,883,270	51,635,256	5.58	1,479,867	△4.2	3.75
2019	2,791,092	51,849,861	5.38	1,423,610	△3.8	3.61
2020	2,611,401	51,829,023	5.04	1,281,773	△10.0	3.25
2021	2,604,437	51,638,809	5.04	1,272,178	△0.7	3.24
2022	2,649,007	51,439,038	5.15	1,327,587	4.4	3.41
2023	2,776,291	51,325,329	5.41	1,300,774	△2.0	3.35

[그림-1] 연도별 실제 국민 헌혈률(2014~2023)



1) 출처: 통계청 혈액정보통계
 2) 출처: 통계청 혈액정보통계

- 이와 같은 혈액 보유량 감소는 우리나라 전체 헌혈자(헌혈 가능 나이: 만 16세 이상)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0~20대 청년층의 헌혈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령화에 따른 혈액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이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헌혈에 대한 부작용 및 건강에 대한 우려 또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또한 향후 헌혈 참여율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2] 연령별 헌혈현황(2023년 기준)³⁾

(단위: 건, %)

16~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실적	구성비
503,624	18.1	1,024,621	36.9	448,166	16.1	474,966	17.1	272,060	9.8	52,854	1.9

- 참고로 일부 시도교육청 또한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3]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타시도 교육청

교육청명	조례명	공포일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2024.7.5.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2024.9.29.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2024.11.1.

- 따라서 동 조례안은 헌혈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학생들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3) 출처: 통계청 혈액정보통계

나. 조례안의 체계와 주요 조문별 검토

1)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총 7개의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4조는 헌혈교육을 위한 시행계획을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체계, 그리고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동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실제적 내용에 따라 적절히 순서를 정하고 관련 지침⁴⁾ 등을 대부분 준수하고 있는바, 형식적 측면에서 조례의 구성 체계상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에 대한 검토

- 안 제3조는 서울시교육감에게 모든 학생에게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고(제1항), 학교장에게는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제2항)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헌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회적인 헌혈 행사를 개별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을 뿐, 헌혈교육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이나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4) '2022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법제처, 2022.8.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10판)', 법제처, 2021.12

[표-4] 헌혈 관련 업무 담당부서(서울시교육청)

부서명	담당업무
체육건강예술교육과	학교 보건업무 총괄 및 학교 단체헌혈 협조 등
민주시민교육과	학생봉사활동과 연계한 학생헌혈 활성화 등
총무과	직원 헌혈참여 관련 행사 등

○ 따라서 안 제3조는 헌혈교육에 관한 사업 시행 초기 단계에서 교육감 및 학교장의 역할과 책무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조례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적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이라고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3조제1항 중 ‘모든 학생’을 교육 제공의 유연성 확보 및 학교 업무부담 완화를 이유로 규정 중 ‘모든’을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 2. 13.)

그러나 안 제3조제1항은 교육감에게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한 선언적 의미의 임의규정으로, 이는 헌혈을 독려하는 교육이 아니고 헌혈의 가치, 인식 제고 등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내 학생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의미있다 할 것입니다.

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에 대한 검토

○ 안 제4조는 헌혈교육 추진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안 제1항),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명시(안 제2항)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

도록 명시하는 것은 현혈교육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고,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할 것입니다.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업무협약’은 현재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2항제4호의 ‘현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에서 ‘업무협약’ 내용을 삭제하여 ‘현혈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 2. 13.)

- 그러나 시행계획은 교육감이 수립 주체이며, 이러한 시행계획은 교육청의 종합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 더욱이 부서별 업무가 구분되어 있다하더라도 하나의 기관에서 추진하는 정책일 경우 해당 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춰 협력과 연계가 필요하다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사업(안 제5조)에 대한 검토

- 안 제5조는 교육감이 현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한 현혈 교육의 운영(안 제1호)과 교육활동 운영(안 제2호), 현혈 인식 개선을 위한 각종 문화 협력 사업(안 제3호)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교육감이 현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함으로써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교육 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안 제5조제1호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을 ‘교육과정 또는 봉사활동 등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으로, 안 제5조제3호의 ‘각종 문화 협력 사업’을 ‘협력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2.13.)
 - 그러나 봉사활동 또한 현행 교육과정인 ‘창의적 체험활동’에 포함되어 편성⁵⁾되어 있는바, ‘봉사활동’을 교육과정과 분리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헌혈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단순히 ‘협력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보다 ‘각종 문화 협력 사업’으로 명시하는 것이 사업 범위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헌혈은 자유의사에 따라 아무 대가 없이 혈액을 기증하는 것이므로 헌혈교육이 헌혈을 강제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교육과정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5) 포상(안 제7조)에 대한 검토

- 안 제7조는 헌혈교육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혈교육에 공로가 있는 대상에게 포상함으로써 동 사업에 관한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여 헌혈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으로 생각됩니다.

5) 현재 교육과정에는 ‘봉사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에 해당되나, 2022 개정 교육과정(2022년 고시)에는 ‘동아리 활동의 하위 활동’으로 편성되어 있음

-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실질적인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 포상의 대상을 ‘개인’ 이 아닌 ‘교직원’ 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9, 2025.2.13.)

그러나 표창 대상을 ‘개인’ 이 아닌 ‘교직원’ 으로 수정하는 것은 대상범위를 소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며, 특히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을 배제하는 위험성을 갖는다 할 것입니다.

더욱이 교육감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도 표창대상을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 으로 규정⁶⁾되어 있는바,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은 별도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해당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6)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서울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 수여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헌혈의 가치에 대한 인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 내에서 헌혈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헌혈교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

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

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

4. 그 밖에 교육감이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헌혈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에 특히 공로가 있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